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 (7)

서 영 호*

공정위 독점관리과 사무관

1.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유권해석

(1) 피사취어음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

▶ 사안

- 원사업자 A건설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거래에서 B건설로부터 목적물을 수령(1998. 1. 15)한 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만기일 : 1998. 7. 16)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1998. 1. 26)하고 B건설은 어음할인을 통해 현금 수령함.
- 이후 추가공사비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자, A건설은 동 어음만기일에 피사취 부도를 발생시킨 후 같은 해 8. 10자로 이를 해제
- 이 경우 A건설이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유권해석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바, 이는 하도급법이 어음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 현금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급된 어음이 피사취 부도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으로 봄이 타당함.
- 만기일 후 피사취 신고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어음의 만기일에 현금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어음 지급시점에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다음 호부터 필자가 공정위 하도급기획과 황원철 사무관으로 바뀝니다.



- 부도로 인한 대금 미지급의 경우 법정지급기일부터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동 건의 경우도 법정지급기일부터 지연이자가 계상된다고 할 것임.
- 동 건의 경우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어음만기일 전에 동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는 하도급대금 채무가 여전히 결제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도급법의 취지상 대금미지급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참고

- 수급사업자가 이미 은행에서 할인을 받아 사용하였을 경우, 어음만기일이 아닌 법정지급기일부터의 지연이자를 부담케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중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 지연이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본 건의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어음할인시 이미 할인료 상당액을 공제당하였고 할인은행으로부터 피사취 부도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시 하자이행증권 미제출 등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을 고려한 것과 같은 이유로 원사업자의 피사취 신고에 있어서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명백하다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대물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

▶ 사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아파트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법상 지연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유권해석

-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채무(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며.
 - 지연이자는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민법 제397조)
 - 이자는 유동자산인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불대체물인 토지 등의 사용대가는 이자가 아님.
 - 이자제한법도 금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동법 제1조)
- 본 건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아파트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목적변경(구채무인 수급사업자의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아파트라는 특정물채권이 새로 성립)에 의한 갱개가 성립됨.
- 따라서 원사업자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금전채권이 아닌 아파트라는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3) 하도급채권의 가압류에 대한 문제

▶ 사안

-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채권이 법정지급기일 전에 가압류된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채권자 : 수급사업자의 채권단, 채무자 : 수급사업자, 제3채무자 : 원사업자]



▶ 유권해석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원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자(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하도급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원사업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그리고 제3채무자(원사업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채권이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이상 하도급법 위반이 되며 어음할인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4)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석 문제

▶ 사안

- 1)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대등한 지위” 또는 “당해업종의 특수성” 해석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기일을 60일 이상 연기함에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동의하는 경우 동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권해석

- 1)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대등한 지위” 또는 “당해업종의 특수성” 해석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하여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의 예외조항으로서
 - 동조 제1항제1호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대등한 지위”라 함은 먼저 회사의 외형규모인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상호 대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독점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를 말할 수 있으며,
 - “당해 업종의 특수성”이란 당시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 업종의 고유한 상관행 및 경제현상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를 말할 수 있음. 그러나 상기 예외규정의 적용은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신중을 기함이 필요함.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기일을 60일 이상 연



- 기함에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동의하는 경우 동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조항으로서 동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별도의 지급기일을 인정하고 있는 바,
- 당사자간에 상기와 같은 조건을 명시하여 별도의 대금지급기일에 합의하였을 경우라도 상기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적법성을 인정키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별도의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것과 상기 예외조항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5) 지연이자 산정기준일에 대한 문제

▶ 사안

- 원사업자 A는 1997. 7. 1 수급사업자 B에게 건설공사(토공사)를 위탁하였다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미수령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31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 1998. 5. 26 당사자간에 공사 중도타절을 합의하고 정산물량에 대한 실사과정을 거쳐 1998. 10. 30 타절정산금액(지연이자 미포함)을 확정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정산금 청구)하고, 1998. 11. 23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음.
- 공사를 중단하고 중도타절(지연이자 미포함)한 하도급대금의 정산금에 대하여 지연이자 산정기준일을 공사중단시점(1997. 12. 31)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산금청구일(1998. 10. 30)로 볼 것인지 여부

▶ 유권해석

- 하도급 관련 조항

*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아래 두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 법조항 취지

계약이 체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할 즈음 원사업자가 예산절감, 자사직영, 수급사업자의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및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발주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

*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법조항 취지

원사업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케 하여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조기에 확정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며, 차후에 나타난 불량품이나 하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또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과다하게 유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

*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법조항 취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종업원의 임금, 자재대의 지불이 곤란해지고 최악의 경우 도산까지 이르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의 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동 건에 있어 공사중단일을 목적물 인수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공사중단에 따른 목적물 인수일은 공사중단의 사유, 당사자간 계약서 조항, 발주자로부터의 대금수령 여부, 공사현장소장 등 관계인의 확인, 수급사업자의 대금청구 여부 및 기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

· 다만, 동 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중도타절(정산)시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공사중단의 귀책사유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원사업자가 공사중단일에 사실상 목적물을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i)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중단시켰는 바, 이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때부터 동 목적물은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하에 있고, 또한 공사중단의 귀책사유가 원사업자 자신에게 있는 이상 동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ii) 하도급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상 수급사업자로부터 별도의 기성청구를 받지 않아도 기성청구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원사업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

iii) 하도급법 제8조 및 제9조의 취지가 원사업자의 임의 발주취소 규제 및 단기간 내 채권·채무확정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iv) 만약 공사중단일을 목적물 인수일로 보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중도타절이나 정산금 지급 등을 고의로 지연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와 상반된다는 점.



· 이 경우 당사자간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 인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준공이나 기성청구를 통지받았을 때에도 원사업자는 검사 등을 통한 정산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와 협의 또는 자체정산(실사)을 통하여 우선 대금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까지는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어야 함.

다만, 동 대금지급 이후 수급사업자와의 최종정산(타절) 결과 금액의 차이나 손해부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환수 또는 추가지급 등을 통하여 조정하든지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임.

※ 판례 1<대법원 89.12.26 선고88다카32470, 88다카32487 판결>

건축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 판례 2<대법원 91.4.23 선고90다카26232 판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해야 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경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

- 지연이자 산정기준일에 대하여

· 따라서 동 건의 경우 위 검토의견과 같이 공사중단일을 사실상 목적물 인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심결례

(1) 대흥공업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재결 제99-2호)

- 위탁내용 : 자동차용 램프(미등, 브레이크 등)용 소켓배선조립
- 위반행위 :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 이의신청 내용

①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1호(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여부

<이의신청인 주장>

수급사업자인 ○○회사와 계속적인 납품관계임을 감안하여 항상 발주자로부터의 수금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결은 위법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였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을 볼 때 양자간에 합의가 없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②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2호(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여부

〈이의신청인 주장〉

이의신청인이 경영하는 부품제조업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한 물품을 수령한 후에 그 물품을 다시 조립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특수한 업종으로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결은 위법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도급한 물품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품질검사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특수한 업종이어야 하는데 이의신청인이 경영하는 부품제조업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③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취소가능 여부

〈이의신청인 주장〉

수급사업자가 이미 인천지방법원에 동일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향후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민사소송과는 다른 제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주)한진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재결 제90-3호)

- 위탁내용 : 수리위탁
- 위반행위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인 주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피심인이 수리과의 산정 금액을 업무과에서 감액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수급사업자 ○○회사는 1988. 11월 거래가 중단된 때까지 약 5여년간 피심인과 거래하여 오면서 피심인의 업무과에서 산정한 하도급대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여 왔으므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책무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제 와서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더욱이 이에 대한 연 25%의 지연이자마저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제3호에 의하여 3년이므로 '87.6월 이전의 하도급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즉 피심인은 이를 지급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 미부담 어음할인료 지급명령은 부당함.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부



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급사업자 ○○회사는 피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60일 이상의 지급기일을 정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심인은 어음할인료의 부담을 면한다고 하여야 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회사가 그 동안 5여년간 하도급거래를 해오면서 아무런 이의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책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 ○○회사는 피심인에 비하여 거래상 지위가 낮은 상황에서 피심인과의 하도급거래를 계속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에 걸쳐 피심인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지급한 사실에 대해 계속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에 관한 민법상의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1987. 6월 이전의 하도급대금의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 건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회사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으로 인한 ○○회사의 피심인에 대한 채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시정 명령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설사 동 채권이 양당사자간의 하도급계약시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회사의 신고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가 민법상의 채권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조사를 기피 또는 지연시키거나 이행을 늦출수록 원사업자가 유리해지고 상대적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하도급법이 정하는 목적달성이 곤란하며,

둘째,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3년간 보존의무는 민법상의 도급에 관한 채권소멸시효를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사·시정은 신고 또는 인지사점으로부터 서류의무보존기간인 과거 3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피심인은 하도급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인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왔다고 판단되는 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60일 이상의 지급기일을 정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피심인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된 어음에 대한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함.

3. 대법원 판례[95누10320, 1995.6.16]



▶ 관련사건 : 대륙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결 제92-182호, 1992. 10. 22)

▶ 판결내용

- 하도급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의 범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됨.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범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음.

▶ 판결 의의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목적물의 인수여부, 대금의 지급여부만을 판단하면 되지 피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판단하여 심결할 필요가 없음(판단기준을 제시).
- 즉 원사업자가 정산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단 하도급대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목적물이 인수되면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밖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임.

토막상식

할인가능어음 割引可能語音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할인가능어음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 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함.

①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②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③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④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⑥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⑦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